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2.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5.1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갑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영등포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단위:천원)

안건번호	사업명	사 업 내 용	출연금액
계			3,629,309
101	영등포구장학재단 출연금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	324,000
102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공연예술 진흥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	3,288,600
10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방세제개편 등 연구	16,70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기영)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¹⁾의 개정(2016 회계 연도 시행)에 따라 2016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것으로,
- 영등포장학재단 출연 등 3개 사업 (총 36억여 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 참고로, “법” 개정취지는 출연금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 하려는데 있고,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의미는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 따라서, 출연금액은 별도의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102
----------	-----

제출년월일 : 2015. 1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이유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대상 : (재)영등포문화재단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운영재원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

다. 사업내용

-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 영등포 구민회관 및 영등포아트홀 관리·운영
-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북카페 운영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

라. 출연 필요성

-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구민회관 시설 및 영등포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영등포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마.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소요예산)

- 범 위

-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구민회관 및 아트홀 운영·관리, 문화행사 추진
- 영등포 구립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

- 출연금액 : 3,288,600천원

-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문화체육과 소관) : 750,000천원
-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교육지원과 소관) : 2,538,600천원

※ 2016년도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

3.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운영재원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

참 고 사 항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기본재산의 조성)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등)

-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한다.
- ②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공연, 전시, 문화강좌, 학술,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영등포구민을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하며,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

-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